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2018. 8. 20.

문서번호	경영지원팀-23512	선임	경영지원	경영본부	대표이사		
결재일자	2018.08.22.	08/20	08/20	08/20	전결08/22		
공개여부	공개	이혜민	서혜영	최구환	최경란		
방침번호	대표이사방침 제(822)호	협 조					

추진근거	- 『사무위임 전결 내규』(2018.04.30.) - 『노사협약안』(2018.06.27.) - 『20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서울특별시, 2018.03)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8.07.03.)		
대 내 외 협력현황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	-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토여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옴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 령 및 기타 고 려 사 항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 타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 자 원 의 활 용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관 계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 련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노사협의안 및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라 보수규정 시행내규의 내용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1. 개정 사유

- 『사무위임 전결 내규』에 의거하여 전결권자의 직책명 변경
- 『노사협의안』(2018.06.27.)에 따라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 지급 규정 개정
- 『20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서울특별시, 2018.03.)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8.07.03.)에서 정하는 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 기관 준수
- 서울시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구에 의거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준용

2. 주요 골자

-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8조(휴일근무수당) 1항』의 휴일근무계획 승인자를 본부장으로 개정함.
-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9조(연차 휴가수당) 2항』의 연차 수당을 퇴직 시 정산하는 것으로 개정함.
-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11조(학비보조수당) 1항』을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평생교육시설로 학교의 정의를 변경함.
-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11조(학비보조수당) 1항』을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함.
- 『보수규정 시행내규 <별표 5>(경력 환산 기준표)』에 시간강사 활동 및 개인사업체 운영 경력 인정 사항을 추가함.

3. 개정 내용

- 『사무위임 전결 내규』에 관한 건
 -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8조(휴일근무수당) 1항』 중 “휴일근무계획을 사전에 인사담당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휴일에 근무하는 4급 이하의 직원에게 지급한다.”를 **본부장**으로 개정함.
- 『노사협의안』(2018.06.27.)에 관한 건
 -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9조(연차 휴가수당) 2항』 중 “연차 휴가 수당을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12월에 지급하고 익년 1월중 정산한다”를 “**연차 휴가 수당을 매년 12월에 정산하되 퇴직 시 직원의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를 재정산한다.**”로 개정함.
- 『20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서울특별시, 2018.03.)에 관한 건
 -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11조(학비보조수당) 1항』 중 “비인가 대안 학교에 취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학자금을 지급한다”를 “**대안 학교에 취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에 한하여** 학자금을 지급한다.”로 개정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8.07.03.)에 관한 건
 -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11조(학비보조수당) 1항』의 ““중학교·고등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10조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회교육시설**을 말한다.”를 “**평생교육법 31조**”, “**평생교육시설**”로 개정함.
- 『공무원 보수규정』에 관한 건
 - 『보수규정 시행내규 <별표 5>(경력 환산 기준표)』에 “**6. 대학 등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주당 강의시간에 따라 비율을 환산한다.**”
 - 주 9시간 이상 : 5할
 - 주 5시간 이상 9시간 미만 : 4할

- 주 5시간 미만 : 3할

7.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경력의 경우 소득증빙 유무에 따라 경력을 반영한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체 손익계산서 등 관련 서류 확인"을 추가함.

4. 참고 사항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절 차 : 대표이사 승인 후 개정
- 시 행 일 :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

[별 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1. 『보수규정 시행내규』 전문 1부.

[붙 임] 2. 『노사협약안』(2018.06.27.) 1부.

[붙 임] 3. 『20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1부. 끝.

[별 지]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휴일근무수당) ① 휴일근무계획을 사전에 인사담당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휴일에 근무하는 4급 이하의 직원에게 지급한다.	제8조(휴일근무수당) ① 휴일근무계획을 사전에 인사담당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본부장 의 승인을 받은 경우 휴일에 근무하는 4급 이하의 직원에게 지급한다.
제9조(연차 휴가수당) ② 연차 휴가수당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12월에 지급하고 익년 1월중에 정산한다.	제9조(연차 휴가수당) ② 연차 휴가수당은 매년 12월에 정산하되 퇴직 시 직원의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를 재정산한다.
제11조(학비보조수당) 2. “중학교·고등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10조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회교육시설을 말한다.	제11조(학비보조수당) 2. “중학교·고등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31조 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을 말한다.
4. 비인가 대안학교에 취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학자금을 지급한다.	4. 대안학교 에 취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에 한하여 학자금을 지급한다.
<별표5> 경력환산 기준표 (중략) 1. 위 기준은 해당 기관 또는 업체(단체)의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단체)는 성격, 경력내용 등에 따라 준용하여 환산 적용한다. 3. 적용대상 경력은 당해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경력기간의 계산은 7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7개월 미만은 1년으로 인정하지	<별표5> 경력환산 기준표 (중략) 1. 위 기준은 해당 기관 또는 업체(단체)의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단체)는 성격, 경력내용 등에 따라 준용하여 환산 적용한다. 3. 적용대상 경력은 당해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경력기간의 계산은 7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7개월 미만은 1년으로 인정하지

현 행	개 정 안
<p>않는다. 단, 개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p> <p>5. 경력기간 환산 시 둘 이상의 경력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 쪽의 경력을 적용한다.</p>	<p>않는다. 단, 개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p> <p>5. 경력기간 환산 시 둘 이상의 경력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 쪽의 경력을 적용한다.</p> <p>6. 대학 등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주당 강의시간에 따라 비율을 환산한다. - 주 9시간 이상 : 5할 - 주 5시간 이상 9시간 미만 : 4할 - 주 5시간 미만 : 3할</p> <p>7.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경력의 경우 소득 증빙 유무에 따라 경력을 반영한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체 손익계산서 등 관련 서류 확인</p>